공동주택 외부공간 근미래 트랜드분석

-미술장식품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미술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된다. 하나는, 건축의 미적향상을 위한 미술(Art-in-Architecture Program)과 다른 하나는 공공장소를 위한 미술(Art-in-Public Places)이다.

글 | 김 원 기 기술개발부 대리 02-3433-7719 | E-mail : kimwk@ssyenc.com

1. 서론

1-1. 환경조형물의 현대적 해석

환경조형물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 장소적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변천 되어 왔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변모로 인해 다양해진 산업구조 만큼이나 수많은 형태와 용어로 칭해진다. 일반적으로 환경조형물, 환경미술(Environmental Art), 환경조각(Environmental Sculpture), 공공미술(Public Art), 공공조각(Public Sculpture), 야외(옥외)조각(Outdoor Sculpture)등과 함께 이들을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법률용어로는 '건축물 미술장식'이라고 하여 건축과 미술의 관계에 있어서 미술은 건축에 종속되는 관계로 보는 시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환경조형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위의 용어들을 살펴보면, 환경미술(Environmental Art)의 개념은 '작품을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그 주변의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경향, 현대의 새로운 작품은 새로운 수법의 전시형태를 요구한다. 따라서 작품과 보는 사람과의 보다 전체적인 교류를 의도하여 보는 사람의 주위를 작품(회화 조각, 오브제 등)으로 둘러싸고, 때로는 소리, 빛 따위도 가해서 독특하게 꾸민 환경을 말한다.'

공공미술(Public Art)의 개념은 '공공(Public)의 의미와 미술(Art)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공미술은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the public places)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공공장소에 놓여지는 미술,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공공장소를 조성하는 미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환경조형물의 또 다른 관점에서는 모뉴먼트(Monument/Monumental sculpture)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환경조형물, 환경조각, 공공미술, 공공조각, 야외조각 등의 개념을 거쳐 공공미술로써 정의 내리고 있다.

야외조각의 개념은 조각의 개념에서 출발해 정의 내리고 있다. 마가렛트 로비넷트에 의하면 '조각은 피라미드 시대부터 마천루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회, 문화적 매개체로서 또한 인간의 내적 정신을 표현하는 언어로써 상용하여 왔기 때문에 조각의 언어란 시대를 초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해 야외에 세워진 조각 작품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즉, 조각 특히 야외조각의 영속적인 가치는 미적인 질, 조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말한다.

1-2. 국내 미술장식의 변천사

1930년대 미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공공미술제도는 건축과 조경, 조형물의 종합적인 환경디자인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라 데팡스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 전후(戰後)로 폐허화된 땅에 친환경이나 친인간 이란 개념이 배제된 채 도로와 상가가, 공장과 학교가, 연립주택과 공원(공터)이 개발명분 아래 졸속으로 재건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 도시계획에 따른 삶의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1980년대 문화향수와 도시디자인에 대한 의식과 더불어 1982년에서야 도시문화환경 개선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문예진흥법에 의해 실행되었으나 건축법시행령과 건축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권장사항이었던 것이 1984년,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을 앞두고 건축법시행령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건축과 소관의 의무조항이 되었다. 1995년 이후로는 문화과 소관으로 위임되었으며 현재는 이 제도의 결과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작품을 소장하게 되었다.

1-3. 배경 및 목표

우리나라의 제도는 개인의 자본으로, 개인소유의 장소에, 공공을 위하여 예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 또한 '공공미술'이나 '환경 조형물'이라 하지 못하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이라고 규정하는 태생적 모순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장식품이라는 이름으로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잡은 우리나라 환경조형물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의 향후과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미술장식품 제도의 역사

2-1. 미술장식품과 공공미술의 현실

공공미술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된다. 하나는, 건축의 미적향상을 위한 미술(Art-in-Architecture Program)과 다른 하나는 공공장소를 위한 미술(Art-in-Public Places)이다.

공공미술의 제도화는 193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주 목적은 경제공황으로 실직한 예술가들에게 작품의 질적 구분 없이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미술가들에게 연방정부 문화예산의 90%를 지원, 가난한 거리의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려하는 차원이었다(Federal Arts Project). 나머지 예산의 10%는 공공건물의 미적향상을 위해 공공건물 건축비의 1%를 할당하여 모인 자금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작품의 선정도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작가에게 의뢰하였다.

이 두 측면을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건축물 미술장식품제도는 공공장소의 문화예술 공간형성 차원이 아닌 건축물의 미적 향상, 제도명칭 그대로 건축을 장식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미술장식제도의 사업비는 100% 건축주에 의한 의무적 자금으로서 정부의 지원금이 사실상 전무하다. 지원금이 없으니 그만큼 공무수행기관의 세심한 관리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 제도에 의한 작품설치 및 계획수립에서 완료까지 전문기관의 개입도 어렵다. 다만 작가선정 과정에서 일반 공모나 지명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도 하며, 협회와 같은 관계기관에 작가를 의뢰하거나 화랑과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 선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선정된 작가의 작품은 미술, 건축, 조경, 평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미술장식품 심의를 통해 승인의 가부를 결정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문기관과 위원의 공정성 논란으로 그 신임도에 대해 부정적인 마찰음이 발생하기도 한다.

2-2. 현행 미술장식품 제도의 의미

우리나라에서 환경조형물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시설물의 출발은 1950년대 초 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애국선열들의 동상건립에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이란 조항이 도입되면서 부터였다.(표1 참조)

〈표 1〉 건축물 미술장식품 관련제도의 변화

초기 (1950년대 초 ~1970년)	도입기 (1972년~ 1984년)	건축제도를 통한 운용기 (1984년~1995년)		제도 재정비 시기(1995년~ 현재)
		설치의 의무화	설치 권장전국적 시행	
- 50년대초 / 제3공화국 : 애국선열 동상 건립운동 및 민족기록화	- 50년대초 / 제3공화국 : 애국선열 동상 건립운동 및 민족기록화 - 문화예술진흥법 제정(1972년)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개념 도입. - 건축비용의 1/100이상 금액에서 미술장식품 설치권장	- 서울시 건축조례(1984년) :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 의무화 조항신설 (1993년 조례 개정시 권장사항으로 바뀜)	- 건축법 시행령(1988년) : 미술장식 조항 신설, 전국적 시행 - 건축법 시행령 개정(1992년) : 미술장식 설치 권장 명시	- 문화예술진흥법, 동법시행령, 지자체 조례 순으로 체제정비 (1995년) : 건축관련 제도에서는 관련조항 삭제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000년) : 건축비용의 1/100이란 용어 사라짐

1988년 건축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미술장식품 제도는 건축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다소 복잡한 체제로 운용되다가 1995년에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의 체계로 일원화되었다.

현행 미술장식품 관련 조문은 1995년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면

〈표 2〉 현행 건축물 미술장식법(문화예술진흥법)의 주요내용

주요항목	내 용	관련조항
설치대상 건축물	– 건축물용도 : ①공동주택(기숙사제외), ②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바목,사목,아목시설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④판매 및 영업시설, ⑤의료시설 중 병원, ⑥업무시설, ⑦숙박시설, ⑧위락시설, ⑨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령 제24조 제1항
	– 건물의 크기 : 연면적10,000㎡ 이상	령 제24조 제1항
	– 건물의 종류 : 신축 및 증축	령 제24조 제2항
건축주	– 건축주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법 제11조
미술장식 비용	– 미술장식 비용 :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령 제24조 제1항
	– 연면적 산정 :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공조실 면적 제외	령 제24조 제1항
	– 건축비용 산정방식 1)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 : 건축비용= 표준건축비×연면적 2)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 : 표준건축비×95%×연면적	령 제24조 제3항
	–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0.1%이상 0.7%이하 사이에서 지자체가 정함	법 제11조 제2항령 별표1의2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1)시,군 이외의 지역 (1)연면적 1만㎡이상 2만㎡이하 : 건축비용의 0.7% (2)연면적 2만㎡초과: 연면적 2만㎡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0.7%에 해당하는 금액+2만㎡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0.5%에해당하는 금액 2)시,군 지역 : 건축비용의 0.5%이상 0.7%이하 사이에서 지자체가 정함	법 제11조 제2항령 별표1의2
미술장식 종류	– 조형예술물 :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 환경조형물 :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령 제24조 제4항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방법	– 감정, 평가신청 1)특별시, 광역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2)그 외의 지역 : 시장, 군수에게	령 제24조의2 제1항
	– 결과통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	령 제24조의2 제2항
미술장식심사 위원회	– 기능 :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	령 제24조의3 제1항
	– 구성 : 미술, 건축, 환경, 공간 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인 대표	령 제24조의3 제1항
	– 심의내용 : 미술장식의 가격, 미술장식의 예술성,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령 제24조의3 제2항
	– 심의결과 공고 : 미술장식심의 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	령 제24조의3 제3항
철거, 훼손, 조치	– 철거, 훼손, 용도변경, 분실 :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	령 제25조
지방자치 단체 위임사항	– 공동주택의 미술장식 비용 : 건축비용의 0.1% 이상 0.7% 이하	법 제11조 제2항 령 별표1의2
	– 시, 군 지역에 위치한 기타 건축물의 미술장식 비용 : 건축비용의 0.5% 이상 0.7% 이하	법 제11조 제2항 령 별표1의2
	–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령 제24조의2 제3항
	– 미술장식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령 제24조의3 제4항

서 2000년에 전문개정을 통하여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주요 항목과 내용은 〈표 2〉 와 같다. 이 때 이루어진 개정의 특징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1%법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전까지 '건축비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었던 미술장식의 비용을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조문을 바꾸고 별표에서 0.7%를 상한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법은 사라진 셈이 되었다.

둘째, 미술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의 종류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 공동주택에서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항의 바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이 제외된 반면, 관람집회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속에 관람장이 추가되었고 공공용 시설 중에 전신전화국, 촬영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추가되었다.

셋째, 연면적 및 건축비용 산정방식을 축소하였다. 즉, 연면적 산정에 있어서 변전실과 발전실의 면적이 제외되었으며, 건축비용 산정방식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가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일 경우 표준건축비의 95%를 기준으로 하게 함으로써 미술장식품의 비용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넷째,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의 1000분의1 에서 100분의1 사이였던 조항이 1000분의1 에서 1000분의7 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기타 시설물은 특별시와 광역시와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용의 1%를 그리고 시.군 지역에서는 0.5~1%의 비용을 설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시.군 지역의 경우 0.5~0.7% 로 축소하고, 그 밖의 지역은 연면적이 20,000㎡이하면 0.7%, 20,000㎡ 초과면 20,000㎡까지는 0.7%,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 또한 전체적으로 미술장식품의 비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다섯째, 미술장식품의 설치 절차와 방법, 그리고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적인 보완을 도모하였다.

기존에는 미술장식품의 설치 절차와 평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설치에 따른 감정, 평가신청 및 이에 대한 결과 통보 등을 조문에 명시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심의내용, 심의결과 공고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미술장식품의 철거 및 훼손 시의 조치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미술장식품이 철거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건축주에게 귀책의 사유가 없지 않은 한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점은 미술장식품의 사후 관리에까지 제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3. 미술장식품 계획 및 시공

1) 계획 측면에서의 접근

미술장식품을 계획함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5가지의 분류 체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주제별 ②이용성별 ③장소성별 ④형태별 ⑤재질별 계획으로 구분되어지며, 각 단계별 세분류는 〈표 3〉과 같다.

〈표 3〉 미술 장식품 계획의 분류체계

대분류	주제별	이용성별	장소성별	형태별	재질별
세분류	1.시간 2.자연 3.인간 4.오감	1.감상요소 2.체험요소 3.시설요소	1.개방공간 2.위요공간 3.초점공간	1.조각형 2.부조형 3.벽화형 4.주물형	1.석재 2.철재 3.목재 4.합성수지재 5.콘크리트재 6.페브릭재

주제별 분류는 가장 기본적인 작품방향으로 단지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용성별 분류는 입주민의 연령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단지배치에 따라서는 작품의 위치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고, 형태별 분류는 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재질별 분류는 동시대의 트랜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중에서 건축주나 건설사의 주관과 의견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단계는 이용성과 장소성이며, 나머지는 작가의 주관이 지대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주제별 분류단계의 사례로는 〈그림 1〉에서 처럼 자연이라는 모티브를 알기 쉽게 해석한 작품으로 파도나 구름이 연상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술작품이라는 것이 이해가 난해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시도는 감상자를 배려한 긍정적인 사례라고 보여진다.

〈그림 2〉의 작품은 단지의 입구부에 설치된 것으로서 문주의 역할을 한다. 근래에 공동주택의 상품성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차별화, 특화라는 이름 하에 구별되는 외부환경 시설을 지향하고 있는 경향을 볼 때 일률적인 문주를 대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품이라는 것이 아무리 뛰어난 매력을 품고 있다고 해도 설치위치의 고려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작품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은 공감되는 바이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장소성을 고려하지 않아 작품따로 공간이미지 따로라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있다. 공간의 성격과의 조화로 작품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림 3〉은 선큰광장의 한 벽면을 이용하여 수경요소와 연계함으로서 건조해진 공간에 청량감과 함께 감상가치를 향상시킨 작품으로 기존의 문제를 개선시켰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근래의 경향인 조각형태나 주물형태라는 고전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도가 보여지고 있는데,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림 4〉나 〈그림 5〉의 작품은 벽화와 조형으로 된 것으로 이용자가 근접하여 직접 만져도 볼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인데 친숙함을 유도한 사례이다.

작품의 재질은 석재와 철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면 변형이 적고 안정감이 높으며 표현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다용 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소재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림 6〉은 페브릭과 조명을 이용한 작품으로 도시감을 표현한

〈그림 1〉 주제별 분류 : 자연

〈그림 2〉 이용성별 분류 : 시설요소

〈그림 3〉 장소성별 분류 : 초점공간

〈그림 4〉 형태별 분류 : 벽화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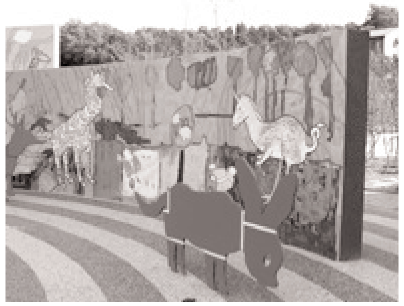

미술장식품도 외부환경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품의 성격과 외부환경과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7〉 모듈러 르 꼬르뷔제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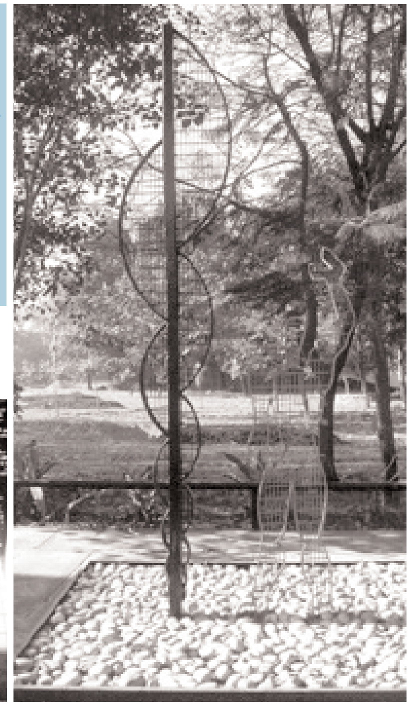

〈그림 5〉 형태별 분류 : 주물형

〈그림 6〉 Glowing Topiary:켄스미스 作(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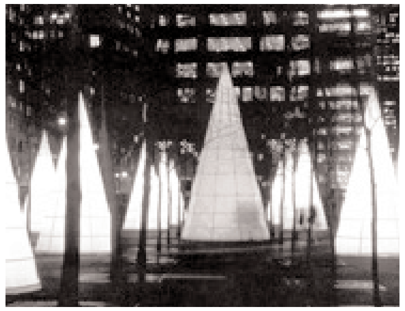

사례로 신선한 느낌을 전한다.

〈그림 7〉은 철재를 이용한 작품으로 투시형태에 도색이 가미된 기법을 통해 주변환경에 융해되도록 하여 환경 적응성을 높인 세심한 배려를 한 사례이다.

2) 시공 측면에서의 접근

미술장식품의 선정 및 설치에는 여러가지 가변요소가 산재해 있다. 우선 정해진 비용(건축비의 7/1000)으로 건축주의 주관에 따라 지역별, 시대별 트랜드에 따라 건설사별 주관부서의 성격 그리고 심의주체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중에서 작품설치에 따른 건설사 주관부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데 이 또한 건설사별로 각양각색이다. 보편적인 업무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건설사별 미술장식품 관련업무

건설사	주관부서	업무내용
H 건설	본사 상품개발실	작품대안 검토 및 선정 / 설치위치 결정
	현장	업체선정 및 설치
S 건설	본사 조경팀	작가선정 및 작품검토, 선정업체선정 및 설치관리
D 산업	현장	작품선정, 업체선정 및 설치
L 건설	본사 건축부	현장별 작품선정, 업체선정 및 설치
	본사 조경부	설치위치 결정
H 산업	본사 조경팀	지정 미술관 단독관리 및 설치관리 (대안작품 제작 후 본사 임원 선정)
HW 건설	현장	작품선정, 업체선정 및 설치 (지자체 추천업체 선정)
HL 건설	본사 기술부조경담당	대안작품 작성 후 작품별 평가 및 선정설치관리
P 건설	현장	현장별 독자시행 및 관리

〈표 4〉의 내용에 의하면 작품선정(작가선정)은 크게 일괄 일임하는 경우와 대안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의 두가지로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으며, 작품의 설치위치에 따른 결정은 보편적으로 건설사 조경담당의 역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설치관리는 현장소관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미술장식품도 외부환경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품의 성격과 외부환경과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3. 결론

3-1. 향후과제

이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인 듯 하다. 해마다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의 사후 관리 역시 현행 제도하에서는 민간 건축주의 몫이다. 사계의 변화가 있어 관리가 어렵다는 현실은 관련자나 관계자 모두 인지하는 사실이나, 그 한가지 예로 코오롱본사 수경공간내에 설치된 니키 드 상팔의 합성수지 분수작품(그림 8)은 겨울이면 유리로 씌워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해법을 찾고있어 지속적인 관리의 덕분으로 원형보존이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다. 반면에 이름도 알수없는 영구적 재료로 만들어진 흥국생명 빌딩앞의 조나단 드롭스키 작품(그림 9)은 이미 설치 당시 문화거리의 명문도, 작가의 애정도 떠난 지 오랜인 듯 하다.

건축주에게나 심의위원들에게나 작품의 보존성에 대한 우려는

〈그림 8〉 코오롱빌딩 : 니키드 상팔 作

앞으로의 미술장식은 시민들의 의식과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건축물 장식이나 전시적인 효과를 위한 미술의 경계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한 장르가 되도록 해야한다.

〈그림 9〉 흥국생명빌딩 : 조나단 드롭스키 作

〈그림 10〉 포스코빌딩 : 백남준 作

형태나 재질로 연결되어 현대미술의 다양한 감상의 기회를 얻기가 힘들다. Kinetic Art, Video Art 나 Sound Sculpture과 같은 전기사용이나 특수장비를 요구하는 작품들이 미술관 외에서 현실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그림 10).

이에 미술장식품에서 조형물은 대부분이 석재나 브론즈, 금속류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현대미술의 다양한 모습은 미술장식품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설득력을 더해준다. 또한 심의용 도서의 형식도 문서 위주의 양식으로 이와 같은 현대미술의 특정한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미술장식 제도의 개선에 앞서 현행제도를 통해서도 양식과 절차의 유연함이 있다면, 개선방향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2. 개선방안

우리나라 미술장식품 시장 규모는 연간 약 3백15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한해의 작품 수도 3~4백여점으로 평균 한 점당 8~9천만원 가량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행제도권 하에서 문화환경개선을 이루었는냐는 물음에는 대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이나 미술장식이나 공공미술의 필요성 여부에는 전문가의 80%이상이 필요하니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미술장식품이 본래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공공미술 개념의 도입, 둘째, 미술진흥에서 도시환경개선으로서의 인식 전환, 셋째, 기금제의 도입, 넷째, 미술장식품의 아이템 확대 등이 앞으로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미술장식품의 선택이 전적으로 건축주의 주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근시적으로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개선과 원시적으로는 상위 법과 제도를 통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미술장식은 시민들의 의식과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건축물 장식이나 전시적인 효과를 위한 미술의 경계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한 장르가 되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시작된 '달리는 지하철 미술관: 와우 프로젝트'는 공공미술의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 받았지만 현행 미술장식제도 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시도였다. 지하철이 미술장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제도가 장애인 것이다. 이후로는 건축주 의식과 더불어 제도의 현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질 것이다.

참고문헌 ::
1. 환경조경물의 변천과 비평에 관한 연구, 이재복, 논문
2. 지방자치단체 미술장식품 설치의 개선방안, 조정송.이유직, 논문
3. 환경 친화적 요소로서 조형물에 관한 연구, 박철희, 논문
4. 월간 환경과 조경, 2003년10월.2004년3,4,7월, 환경과 조경